

##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8. 23.

예천군의회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-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 등의 책무,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어린이 등·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마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 3. 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,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, 제18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#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8월 28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제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☎ 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syyh2000@korea.kr

##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2. “교육시설”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 등의 책무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·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

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
2.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
3.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
4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·안전표지(이하 “교통안전시설”이라 한다) 설치에 관한 사항
5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·정비·유지에 관한 사항
6.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계획
7.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
8.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제5조(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)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어린이 교통안전교육)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.

1.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
2.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

## 교육

### 3.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

###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경찰서, 예천교육지원청, 교통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어린이 등·하교 교통지도)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·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교사, 교통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·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
2.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
3.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
4.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